

출입국관리법

[시행 2009. 6.20] [법률 제9140 호, 2008.12.19, 일부개정]

제5 장 외국인의 등록등

제1 절 외국인의 등록

제31 조 (외국인등록) ①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 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자와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등으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제2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받는 자로서 그 날부터 90 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는 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자로서 입국한 날부터 90 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는 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 항 내지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여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제32 조 (외국인등록사항) 제31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기타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3 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①제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 세미만인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 세가 된 때에는 60 일 이내에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3 조의2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2. 제31 조제4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3.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

는 행위

[본조신설 2002.12.5]

제 34 조 (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①제 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2>

②시·군 또는 구의 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등록외국인기록표·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5 조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4 일 이내에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2, 2001.12.29>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그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 36 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①제 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1996.12.12, 2001.12.29>

②외국인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그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전입신고를 받거나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변경통보를 받은 시·군·구의 장은 지체없이 전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체류지변경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2, 2001.12.29>

⑤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요청을 받은 전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 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12, 2001.12.29>

⑥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이송받은 시·군·구의 장은 신고인의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고 제 3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2, 2001.12.29>

⑦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제 37 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등) ①제 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10>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출국하였다가 그 허가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2. 복수사증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면제대상국가국민으로서 일시출국하였다가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유효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제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국민으로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제31 조제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 항 또는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 항 각호의 1 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 ⑤ 제4 항의 경우 그 외국인이 허가된 기간내에 다시 입국한 때에는 14 일 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반환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내에 다시 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

제 38 조 (지문찍기)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99.2.5>

1. 삭제 <2003.12.31>
 2. 이 법에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자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
 4.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지문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지문찍기를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등 이 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 절 삭제 <1999.2.5>

제 39 조 삭제 <1999.2.5>

제 40 조 삭제 <1999.2.5>

제 41 조 삭제 <1999.2.5>

제 42 조 삭제 <1999.2.5>

제 43 조 삭제 <1999.2.5>

제 44 조 삭제 <1999.2.5>

제 45 조 삭제 <1999.2.5>